

이천시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

소관부서 : 체육진흥과

제정 2014. 2. 24 예규 제228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이천시 체력단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설물 상태를 유지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체력단련시설”이란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를 말한다.
2. “이용자”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는 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.
3. “총괄관리관”이란 체력단련시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4. “관리관”이란 체력단련시설을 설치·관리·운영·보수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총괄관리관 및 관리관의 지정) ①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체력단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시설 관리 공무원을 지정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체력단련시설 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시의 체력단련시설은 체육지원센터(이하 “총괄관리관”이라 한다)에서 총괄 관리한다.
2.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부서에서 설치한 체력단련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한 부서의 장(이하 “관리관”이라 한다)이 관리한다.

③ 총괄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체력단련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5조(예산확보) 시장은 체력단련시설의 설치·관리·유지·보수를 위하여 필요

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설치장소)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공공성이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.

1. 마을단위 체력단련시설은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수의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로서 주로 공공장소(경로당, 마을회관, 소공원 등)에 설치한다.
2. 기 설치된(하천변, 등산로, 자전거도로, 소공원 등) 체력단련시설에 대하여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노후시설 위주로 교체하되,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.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제7조(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등) ① 체력단련시설은 제6조에 따른 장소에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
1.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
2. 수개 마을이 신청할 경우 거주인구가 많은 곳
3. 체력단련시설이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한 곳
4. 그 밖에 다수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

② 제1항에 따른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면적은 체력단련시설 1대당 5.0㎡ 이상으로 하되, 시설의 운동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.

③ 체력단련시설은 안전기준·검사 인증을 받은 기구를 설치하되 운동기구별 특성에 따른 설치장소·면적, 바닥재 및 기초공사의 기술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. 어린이가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할 운동기구 또한 위와 같다.

제8조(신청절차) ① 관리관이 제6조에 따른 체력단련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총괄관리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설치가능 여부를 관리관에게 통보한다.

제9조(관리책임) ① 체력단련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관은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관은 체력단련시설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,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관리관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체력단련시설을 설치·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 체력단련시설의 설치·운영·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경우 총괄관리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총괄관리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10조(대장작성 및 관리) 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체력단련시설 점검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력단련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체력단련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) ① 총괄관리관 및 관리관은 체력단련시설 설치 완료 후 이용자가 그 체력단련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회계과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관은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회계과에 신청하였을 경우 총괄관리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손해배상) 총괄관리관 및 관리관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체력단련시설을 파손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은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 (제10조 관련)

체력단련시설점검대장

시설명	일시	점검자		서명	점검결과	조치사항
		소속	성명			

[별지 제2호서식] (제10조 관련)

(앞면)
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체력단련시설 관리대장</div>				
· 시설명 :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70%; padding: 2px;">관리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</td> </tr> </table>		관리번호	
관리번호				
전 경 사 진 (5×7")				
· 위 치 : · 조성면적 : m ² (국유지, 공유지, 사유지) · 조성일자 : 년 월 일 · 사업비 : 총 천원(국고(기금) : 천원, 지방비 : 천원) · 설치형태 : · 시설내용 :				
간이운동시설	체력단련시설	부대편익시설		
중 점	중 점	중 점		

주) 설치형태 : 등산로, 약수터, 공원, 아파트단지내, 하천고수부지, 마을공터, 가로변, 공공체육시설 주변 등

(이면)

· 세부시설내역

구 분	세 부 시 설 내 역
간이운동시설	
체력단련시설	
부대편익시설	